

#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## 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  
1993. 10. 18.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3년 10월 8일

. 회부일자 : 1993년 10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 95 회 임시회

. 제 1 차 내무위원회 (1993. 10. 18.)상정

.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조영창)

가. 제안이유

- 7.16일자로 시행된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일부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, 사무명,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고
- 사무의 추가 위임을 통하여 행정능력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시군의 계조직권 등 7건의 도지사 관장사무를 추가위임하고
- 소관부서, 사무명, 근거법령 등을 개편된 내용에 맞게 34건을 조정 정비하는 한편,
-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 지원등 16건을 삭제하는 것임.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 전문위원 윤 태 무 )

기구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등의 조문정비 및 주민편익을 위한 일부 위임사무의 추가위임을 통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내용으로는

- 이미 위임된 사무중 삭제되는 사무로서
  -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무를 도에서 직접시행토록 하고
  -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사항은 중앙 및 도에서 직접시행 토록하며
  -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.설치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과
  -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.사용중지 신고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토록하며
  - 계량기 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, 영업정지 명령, 등록의 취소 사무는 그 업무를 폐지하고
  -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자 단속사무는 수시검사로 대체 하도록 하는 내용이며

- 위임이 추가되는 사무(도지사 사무를 시장,군수에게 권한위임)로서는
  - . 현정원범위내에서의 계조직권
  - . 대형점의 개설허가
  - . 액화석유가스 충전,공급,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
  - . 온수보일러,온수기 및 그부대설비공사의 시공자 등록
  - .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채용신고 등
  - . 관광지 관람료 등의 징수대상 결정 및 징수
  - . 관광지 조성계획의 고시(도직접시행사업 제외)사무를 추가위임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도원안대로 의결(참석7인, 찬성7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나. 신구조문대조표